##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69

발의연월일: 2022. 4. 4.

발 의 자: 김두관·김경만·김용민

김정호 · 송재호 · 신정훈

어기구 • 이타희 • 이학영

전용기 · 최기상 · 황운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은 본점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함.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 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임.

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 시에 한정하여 위치하도록 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 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 조). 법률 제 호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에"를 "대한민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u>서울</u>	① <u>대한</u>
<u>특별시에</u> 둔다.	<u>민국에</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